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8년 12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5일

3. 제안이유

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사무관장 부서를 정비하는 한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사무를 위임·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현행 위임조례의 관장부서 재분류 및 부서명칭 변경
-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 및 조문정비
- 수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산시설관리 감독자의 의무·처분의 제한등 7개사무 위임
- 위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개최등 3개사무 민간위탁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행정조직의 개편 및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서의 명칭과 도의 사무를 시군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를 간소화하는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-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를 조정하였고 일부 사무의 위임근거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
- 수산시설 관리감독자의 의무등 축산과 소관 7건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수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도록 하였고
-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및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등 기업지원과 소관 3개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